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025년 기준)

■ 주간보호 서비스별 급여비용

(단위 : 원)

이용시간	등급	이용금액	본인부담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67,770	10,160
	2	62,780	9,410
	3	57,960	8,690
	4	56,380	8,450
	5	54,780	8,210
	인지지원	54,780	8,210

* 비급여비용

항 목	내용	이용금액	비고
식재료비	1식 3,000원 × 1식	1일 3,000원	
간식비	1회 500원 × 2식	1일 1,000원	
기타 요청 물품	보호자 또는 수급자 요청에 의한 물품	실 비	

■ 방문요양 서비스별 급여비용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이용금액	본인부담		
		15%	9%	6%
30분 이상	16,940	2,540	1,520	1,010
60분 이상	24,580	3,680	2,210	1,470
90분 이상	33,120	4,960	2,980	1,980
120분 이상	42,160	6,320	3,790	2,530
150분 이상	49,160	7,370	4,420	2,950
180분 이상	55,350	8,300	4,980	3,320
210분 이상	61,670	9,250	5,550	3,700
240분 이상	68,030	10,200	6,120	4,080

■ 방문목욕 서비스별 급여비용

(단위 : 원)

구 분	이용금액	본인부담		
		15%	9%	6%
차량이용 (차량 내)	86,480	12,970	7,780	5,180
차량이용 (가정 내)	77,970	11,690	7,010	4,670
차량 미 이용	48,690	7,300	4,380	2,920

■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원)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액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하위년처정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기초수급권자	0%

- ①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율(%)에 따르고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 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의해 책정하며 식·간식비 등의 비급여 비용은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② 대상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④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여야 한다.